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여부 확인 및 지역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217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및 지역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2025년 7월 2일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25년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부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확인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 및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기업의 자율적 참여라는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는 한편, 이행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협의체 설치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배출저감제도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제11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1.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및 지역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배출저감 사업장에 대하여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보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출저감계획 수립·이행의 확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u>사업장</u> 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이하 “배출저감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 ----- ----- ----- ----- <u>사업장(이하 “배출저감 사업장”이라 한다)</u> 은----- ----- -----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에 대하여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생략)

<신설>

<신설>

<삭제>

⑧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배출저감계획서 이행 확인 등)

① 환경부장관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출저감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배출저감 방안이나 배출저감 사업장 등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출저감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에 대하여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행 확인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지역협의체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의2제5호에 따른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이행의 확인 및 지

	<u>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내 배출저감 사업장,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 <u>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체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u>③ 협의체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현행법령에서는 화학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¹⁾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되는 화학물질 현황을 매년 조사하는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도²⁾를 규정하고 있으며,

배출저감 대상 물질³⁾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종업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이하 “배출저감계획서”라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6조(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해화학물질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5. 국제적인 전문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지정한 발암성·생식독성 또는 유전독성 등을 가진 화학물질로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2)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사업장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의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현황 등의 조사(이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벤젠 등 9종(2020년) → 포름알데히드 등 53종(2025년) → 배출량 조사 대상 전체 415종(2030년)으로 대상 물질 단계적으로 확대(기후에너지환경부)

한다)4)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5)하고,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를 검토한 후 사업자에게 적합 여부를 통보하며,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에 따라 계획서를 공개하는 ‘배출저감계획서’ 제도를 운

- 4)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이하 “배출저감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받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검토한 후 제출한 자에게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한 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자 중 그 일부 내용을 기업의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자는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비공개 요청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배출저감계획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에 대하여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⑧ 배출저감계획서 작성내용·제출시기,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관련 영업비밀 보호신청 범위·절차 및 영업비밀 심의 기준·절차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법 제11조의2 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화학물질 중 어느 하나를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2. 종업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장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2.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취급량 및 취급 공정
 3.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배출원(排出源: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등 특정 장소에서 화학물질을 배출하거나 불특정 장소에서 다수의 작은 규모나 분산된 형태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지점을 말한다) 및 연간 배출량
 4.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방안 및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5.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실적(최초로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1톤 이상 배출한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해의 4월 30일까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에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이하 “배출저감계획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 및 검토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검토결과서에 배출저감계획서의 적합 여부 상세 내용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수정·보완 요청서에 수정·보완사항 상세 내용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정·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에 따른 검토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영하고 있음.

이에 더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통하여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여부 확인할 수 있으나, 이행 여부 확인 및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조치 요청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저감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음.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절차]

①작성·제출	·사업장은 대상 물질의 취급량, 배출량, 저감기술, 저감방안 및 저감 목표* 등을 포함한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 (→화학물질안전원, ~4.30.) *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전전년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5년 계획을 수립하되,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에서 자율 설정
②접수·검토	·저감계획서의 정확성, 적정성* 등에 대한 기술검토(안전원)를 실시(60일 이내)하고 목표가 소극적이거나 자료가 미흡한 경우 보완 요청 * 배출저감 방안의 적절성과 목표의 도전성을 평가하되, 기업 특성(업종, 규모, 공정 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유사 성격의 사업장간 동일한 기준 적용)
③계획서 공개	·지자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지역사회에 공개하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공정 정보·제품 정보(물질함량, 취급량 등)를 제외한 요약계획서를 공개 가능 *(공개방식) ①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개최, ② 관할 시청·구청·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③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2024년까지 공개된 배출저감계획서는 총 312건
④이행확인	·매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4.30.)를 통하여 이행실적 확인 가능 * 배출저감 이행실적 자료를 지자체에게 제공하고, 필요시 사업장 출입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이행 여부 확인

[최근 5년간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현황 등: 2020~2024년]

(단위: 개소, 건)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배출저감 사업장 수	221	35	26	19	14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건수	242	35	27	21	15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안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필요시 사업장에 대하여 개선·보완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자율적 참여라는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는 한편, 배출저감계획서 제도의 이행력 강화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배출저감계획서의 수립·이행의 확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시민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 단체가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체의 설치와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실제 사업장 소재 인근 주민 및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화학물질 배출 저감에 기여할 수 있어 보임.

한편, 이는 현행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8항6)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으로 협의체의 설치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 법률에서 이를 명확히 하는 긍정적인 취지는 있어 보이며,

6)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이행의 확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사업장,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현행법 제7조의27)에서도 관할구역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이행의 확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를 통한 협의체 구성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협의체 구성 사례]

지방자치단체	근거 조례	협의체 현황
전남 여수시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 제18조(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점검)	'21년 구성
충남 서산시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9조(지역화학안전협의회 구성) 「서산시 지역화학안전협의회 운영 규정」	'21년 구성
충북 청주시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5조(화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22년 구성
충남 공주시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20조(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점검)	'22년 구성
전북 군산시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 - 제5조(군산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제19조(배출저감 계획서 공개 및 이행 점검)	'23년 구성
충북 충주시	「충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21조(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점검)	'23년 구성
충남 천안시	「천안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6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24년 구성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7)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시행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5.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이행의 확인 및 지원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참고로, 이와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으로 2건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0128호 /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0168호)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36